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 시 동의 없이
타인 토지 이용 근거 마련〉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7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민회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5.
3. 회부연월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책임기관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사유·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u> ⑦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u>
<u><신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7조(응급조치) ① (생략) <u><신 설></u> <u><신 설></u>	<u>하는 토지를 출입함으로써 발생</u> <u>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u> <u>⑧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u> <u>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u> <u>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u> <u>률」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u> <u>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u> <u>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u> <u>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본다.</u> 제37조(응급조치)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타인이</u> <u>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제1항</u> <u>제3호에 따른 응급복구를 하여야</u> <u>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u> <u>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u> <u>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u> <u>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u> <u>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u> <u>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u> <u>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u> <u>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u> <u>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복구를</u> <u>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u> <u>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u> <u>복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토지를 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u>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난 발생 시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피해 예방·절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 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경우 부득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를 해당 규정에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개정안은 안전조치 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그 관할 구역에

-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³⁾를 두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⁴⁾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상 응급조치에는 안전조치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가 모두 포함되는바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재난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또한, 개정안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법률 문구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자의적 해석을 통해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보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 의 처
02)6788-5349